

도로구간 변경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5월 7일

양 주 시 장

- 고시일(효력발생일) : 2024. 5. 7.
- 고시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- 고시내용 :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(붙임 참고)
-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요건 및 절차

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	신청을 받은 날부터 ⇒ 10일 이내	주민 의견 수렴 공고 14일 이상	주민 의견 수렴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주소정보위원회 개최	심의 마친 날부터 ⇒ 10일 이내
공고 및 신청인 통보 심의 결과 내용 및 절차	공고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/2 이상	동의 얻은 날로부터 (동의 생략 포함) ⇒ 10일 이내	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	
		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/2 이하	동의 만료일부 ⇒ 10일 이내	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	

※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9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함.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도로명주소팀(☎031-8082-6371)로 문의 바랍니다.

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 1부.